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1] 개요

- 가. 행사명 :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나. 일 시 : 2024. 2. 28. (수) 오후3시~오후5시 20분
- 다.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 라.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최혜영 공동주최
- 마. 참석자 :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단체 활동가, 정책관계자 등 70명

2] 세부내용

가. 실태조사 결과발표

- 1) 설문조사 및 FGI 조사결과 발표(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정신장애인 활동지원 이용 저조(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등록장애인 104천명, 이 중 약40% ‘다른 사람도움 필요’, 주 도움자 ‘부모·형제’ 약60%
 - 활동지원 이용률 4.6%, 생활도우미 0.7%로 공적서비스 이용률 저조
- 가족 돌봄의 어려움
 -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의 어려움 : 건강악화 > 직업 및 취업문제 >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 심적 및 신체적 스트레스
 - 가족이 요구하는 서비스 : 가족상담 및 가족정서지원 > 정보교육지원 > 가사 및 돌봄 지원
- 활동지원 이용경험 등
 - 당사자 88.4% 활동지원 ‘이용경험 없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 58.5%,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서’

26.5%,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해서’ 11.8%,
‘활동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 9.8%

○ 활동지원서비스 제한의 문제점

- 기본적인 일상생활(가사, 식사, 위생관리, 인지기능 저하,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 급성기나 야간에 도움 필요
- 현행 종합조사 도구는 신체기능 중심으로 배점이 높아서 정신장애인의 경우 급여 시간이 적게 부여되고,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편견으로 활동지원사 배치에 어려움이 초래됨.

○ 동료지원 및 절차보조

- 동료지원서비스 ‘이용경험 없다’ 78.3%, 절차보조서비스 ‘이용경험 없다’ 94.2%
- 이용하지 않은 이유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 동료지원 48.2%, 절차보조 72.1%

○ 정책개선제안

- 신체활동지원보다는 가사활동지원과 사회활동 지원제공하는 활동지원 필요
- 정신적 장애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조사항목 추가, 이용자 중심의 종합조사 및 이의신청절차,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관리 등 필요
- 정신건강분야에서 동료지원가 역할 공식화, 동료지원 인력배치 기준이나 근무형태, 관리기관 등에 관한 지침, 개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등의 필요
- 절차보조서비스의 경우 절차보조사업의 내용적 범위 구체화, 권한 부여 등의 과제가 뒤따름

2) 관련 법령 개선(조인영 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활동지원서비스법 등 개정 필요

- 해외에서는 서비스 관련 법률에서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규

정하고, 서비스에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의제기 등을 보장하고 있음.

- 정신건강복지법상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명문화, 의료지원과 활동지원 등 통합적 지원 필요
- 국가와 지자체 의무에 대한 상세한 규정 필요

○ 보다 다양한 인적서비스 제공 필요

- 고용, 평생교육,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주거지원, 가족지원, 위기지원 이외에도 사회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생애능력향상, 건강과 웹빙증진, 관계향상 등의 영역에서 보다 다양한 인적서비스 제공 필요
- 해외 주요국은 개인의 의사결정지원과 사회참여를 중시하고, 종합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조사하고 반영함.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결과 등을 알 수 없어서 이의제기 자체가 어려우며, 기관별 역할이 너무 분화돼 있어서 통합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절차보조의 경우 사법절차상 절차보조역할이 추가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절차보조서비스, 동료지원 등 모니터링이 필요함.

나. 지정토론

1) 동료지원 활성화에 대한 토론(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

○ 정신장애인 자립생활권리 보장 필요

-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복지법상 자립생활센터의 별도 근거 필요
- 동료지원이 여러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필요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자치구별 설치 운영 중, 그에 반해 정신장애인의 경우 서울만 권역별로 3곳 설치운영지원 중

○ 동료지원센터는 장애정도에 따른 근무환경 제공이 가능한 일터

- 동료지원센터의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근무형태, 근무유형 등 선택이 가능하고, 이러한 근로여건이 정신장애인 당사자 장기근로가 가능하게

하고 있음.

-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명문화할 필요있음.

2) 활동지원 활성화에 대한 토론(최승혁 남부장애인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 장)

○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서비스종합조사표

-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바뀌면서 서비스종합조사표의 공통영역은 성인과 아동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4가지(장애인보조기기, 주간활동, 활동지원 등)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1개 유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하며, 전반적으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
- 일상동작 등은 신체장애 중심이어서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음.
- 성인과 아동별이 아니라, 장애유형별로 구분하고, 항목도 달리해야함.

○ 활동지원사 교육훈련 절대적으로 부족

-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자체가 이론과 실기가 전부 50시간, 연령제한도 없음. 진입장벽이 하나도 없는 상황임.
- 정신장애를 비롯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장애 특성과 이해를 위한 교육시간 자체도 부족(신체적 장애 8시간, 정신적 장애 8시간)
- 양성교육, 보수교육으로 나뉘져 있으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음.
-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며, 기관에게 맡기기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

○ 가족급여·활동지원을 위한 별도 급여는 충분한 논의 필요

- 가족급여, 활동급여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에서도 요구되는 측면이 있으나, 활동지원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거나, 이중지원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충분한 논의 필요

○ 낮은 인지율은 지자체와 연금공단 책임이 커

- 복지서비스의 또 다른 사각지대 발생

- 서비스에 대한 낮은 인지율은 국민연금공단, 지지체 모두 책임이 있음.
상세한 안내 필요

○ 동료지원가가 활동지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도

- 활동지원사들이 정신장애인 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 그렇기에 동료지원가가 교육을 받고 활동지원을 하게 된다면 훨씬 좋은 성과가 생길 수 있음.

3) 절차보조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 한국은 ‘당사자형 절차보조’

- 2018. 12. 절차보조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현재 절차보조는 사법조력과는 좀 차이가 있음. 현재 한국형은 당사자형 절차보조를 선택함.
- 절차보조사업은 충분한 정보제공이 핵심이며,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 당사자를 투입해야함.

○ 병원과 의사의 비협조, 기관과 예산 확대 필요

- 병원과 의사들의 협조가 너무 미비함.
- 현재 수행기관 2개 기관, 전국 확대를 위해 예산과 기관 확대 필요
- 2023. 12. 8. 법률안 국회통과

4) 동등한 서비스, 실질적 서비스 요구(박정근 조현병회복협회 부회장)

○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와 비교할 때 현저히 부족한 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경우 당사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지원 중, 활동지원, 주간보호,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센터 등 지역별 많은 것들이 형성되고 있음.
- 부모상담지원도 개인부담과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자산관리분야도 시범사업 중
- 발달장애인은 코로나때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허용해준 바 있고, 올해 가족활동지원을 종료한다고 했으나, 부모들 반대운동으로 10월까지 유예

○ 정신장애인도 가족활동지원 필요

-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비교할 때 정신장애인쪽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장애인등록의 경우도 심한 정신장애인 판정은 극히 어려운 상황
-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당사자, 부모들도 많이 나서지 않았으나 지금은 차츰 변화하고 있는 추세

○ 실질적인 서비스가 늘어나야 함.

- 실질적인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에 주력해야 함.
- 정신장애인은 망상과 환청이 있다면 모두 증증으로 봐야함.

○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격사유 조항 삭제 해야

- 국가가 일을 못하게 법령에 제한을 해두었으면 국가가 지원을 해주거나 정신장애인이 먹고 살게 해주어야 함.

○ 가족이 동등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 동등한 서비스를 요구해야함.
- 복지관도 가고, 서비스를 요구해서 안 해주면 진정도 내고, 민원도 내야 함. 적극적으로 부모가 나서야하는 일임.

5) (김경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서기관)

- 지난해 법개정이 있었고,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두루 들어서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임.
- 대통령이 정신건강을 얘기한 것을 최초일 것이며,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많이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다. 청중 발언 및 질의

○ 종합조사 형식적(가족)

- 종합조사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들어오면서 안 된다고 하고 실제로 안 됨.

- 척도 자체가 정신장애인에게 맞지 않음. 정신장애는 도파민 이상 그리고 약물 부작용이 심각함.
-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도 고려해야함. 가족이 당사자를 돌보다가 이제는 죽게 생겼음.

○ 장애인 권리가 아닌 예산에 맞추는 경향 심해(당사자)

- 장애인의 욕구와 선호, 권리보다 예산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많음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임.

○ 당사자들을 위한 정책토론회 필요(당사자)

-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욕구를 도출할 수 있는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증상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이런 토론회가 더 많아지길 기대함.

○ 정신장애인 인적서비스가 왜 활발해지지 않나(당사자)

- 병세나 기능의 격차가 심하고, 스펙트럼이 넓다보니 당사자나 가족이 모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증세가 좀 좋아지면 흩어지고 하다보니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한목소리가 잘 안 되는 듯함.

○ 요양보호사 자격 인정 등으로 자립을 지원하게 해주길 바람(가족).

- 국가가 요양보호사 자격이라도 하나 인정해줘서 자립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람

○ 질문과 제안(당사자)

- 혁신방안에 활동지원사 등 결격 조항 폐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는가? 정신장애인 일자리 3만개 늘린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있는가?
- 약물 복용이 활동지원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권리협

약에 배치되는 것임.

- 의료계는 가족은 절차보조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는데, 실태조사결과 가족도 절차보조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음.

☞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음. 다만 혁신방안은 10년을 염두하고 발표한 것임(복지부).

○ 특정 직업 결격 사유 규정은 폐지돼야(박정근)

- 요양보호사 의사소견이 첨부되는 것인데, 소견서를 써줄 의사가 없고, 고지하지 않으면 신고의무 위반임. 이러한 제한 자체가 없어야함.

4 행사사진



[붙임] 보도자료 및 관련 기사



보도자료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보도일시	2024. 2. 28.(수) 10:00부터	
배포일자	2024. 2. 28.(수)	
담당부서	인권침해조사과	과장: 김정학(02-2125-9980) 담당자: 이인영(02-2125-9985)
언론홍보	홍보협력과	과장: 육성철(02-2125-9870) 담당자: 이수지(02-2125-9872)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활동지원 등 인적지원서비스 수급 인정·이용률 '저조' -
- 이용률 낮은 이유는 "서비스 몰라서" 58.5% "충분한 시간을 못 받아서" 11.8% "인력 배치가 안 돼서" 9.8%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혜영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2024년 2월 28일(수) 오후 3~5시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인권위가 2023년 실시한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1>(이하 '실태조사')에 대

1)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서비스 경험과 욕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FGI)로 진행했다. 당사자와 가족 대상의 설문조사는 2023. 9.~10.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장애인 단체 등의 등록회원 또는 이용 당사자 422명, 가족 179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장애특성, 일상생활 경험, 서비스 이용경험 및 욕구, 활동지원 및 동료지원, 절차보조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인식, 삶의 만족도와 돌봄 경험(가족) 등을 조사했다.

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14.4%가 “일상생활에 혼련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2.5%가 “외출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부모 53.9%, 형제자매 12.5%, 배우자 6.7%, 친구 3.2%이고, 지역의 지지체계인 사회복지사 및 동료지원사·요양보호사는 각각 15.1%,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
-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중 88.4%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고,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58.5%),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서”(26.5%),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해서”(11.8%), “활동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9.8%)라고 응답했습니다.
- 정신장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가사, 식사, 위생관리, 인지기능 저하,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급성기나 야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행 종합조사 도구는 신체 기능 중심으로 배점을 해서 정신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2)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정신장애인의 39.8%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등록정신장애인 10만 4,000명 중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3,950명(2021년)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의 3.1%로 자폐성장애 14.2%, 지체장애 13.9% 등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이다.

급여시간이 적게 부여되고,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편견으로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동료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3%가, 절차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94.2%가 “이용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각각 48.2%, 72.1%로 집계되었습니다.³⁾
-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2%인 데 반해,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 45.1%,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 44.1%, “가족과 갈등이 심하여 가족이 퇴원/퇴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 36.0%, “지역사회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 14.1%로 나타났습니다.
- 토론회에서는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발제하고,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관련 법령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합니다.

이어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과도손 대표, 최승혁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장, 박정근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부회장이 동료지원·활동지원·절차보조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정신장애인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향

3)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장애 회복 당사자가 정신장애인에게 동료로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절차보조서비스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절차를 돕거나 퇴원 이후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지역이나 가족의 지지체계 부족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입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신장애인을 위한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끝.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활동지원·동료지원·절차보조서비스 중심으로 -



정신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치료받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다양한 인적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중증정신장애인의 수 약 65만2천명,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인정 정신장애인 약 3천명, 정신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1년, 사. 백!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신 분, 수급 달락자이시거나 신청은 영두도 내지 못하는 당사자, 가족 그리고 활동가, 정책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년 2월 28일(수) 오후 3시~5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을지로3가역 나라키움빌딩 소재)

공동주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의원 정혜영, 최혜영

순서	내용	발표자
개회 및 인사말	개회 및 인사말	
발제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신장애인 가족활동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실태조사	홍선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소센터장, 한신대학교 교수)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관련 법령 개선 방안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지정토론	동료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센터장)
	활동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	최승혁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장)
	절차보조서비스 활성화 방안	이정하 (정신장애외인권 파도스대표)
	정신장애인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방향	박정근 (한국장애인회복협회회장)
		보건복지부
종합토론	종합 토론 및 마무리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2)2675-5364

정신장애인 88%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없다"..인권위, 서비스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송서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2023년 정신장애인 가족 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열리는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와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법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88.4%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이 중 58.5%가 "서비스의 존재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회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이나 가족의 지지 체계 부족으로 장기 입원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토론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송서영(shu@mbc.co.kr)

정신장애인 88% "활동지원 이용한 적 없다"...58%는 "몰라서"

[최원정]

인권위 실태조사..."서비스 수급자격 조사시 신체기능 중심 배점" 지적



정신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실태

*정신장애 조항엔, 발국성 정동장애(조울증) 등

2023년 9-10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사업
정신장애인 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422명 가족 179명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한 적 없다' 응답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서비스 종합조사 시간

뉴스룸 | 최원정 기자

정신장애인 88% "활동지원 이용한 적 없다"...58%는

송고시간 | 2024-02-28 16:08

 최원정 기자
기자페이지

| 인권위 실태조사... "서비스 수급자격 조사시 신체기능 중심 배점" 지적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환자 등 정신장애인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은 이들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장애우권익연구소와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과 함께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9~10월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정신장애인 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422명과 가족 1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해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 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정신장애인들이 활동보조 등 인적지원서비스 "몰라서 못 받는다"

[권중훈 기자]

인권위, 2023년 정신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격리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팔을 묶은 채 행진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활동가의 모습. ©에이블뉴스DB

정신장애인 상당수가 활동지원 등 인적서비스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8일 '2023년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서비스 경험과 욕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FGI)로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장애인 단체 등의 등록회원이나 이용 당사자 422명, 가족 17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내용은 일반적 특성, 장애특성, 일상생활 경험, 서비스 이용경험 및 욕구, 활동지원 및 동료지원, 절차보조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인식, 삶의 만족도와 돌봄 경험(가족) 등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14.4%가 "일상생활에 훈련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2.5%가 "외출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부모 53.9%, 형제자매 12.5%, 배우자 6.7%, 친구 3.2%였고 지역의 지지체계인 사회복지사나 동료지원사요양보호사는 각각 15.1%,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중 88.4%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58.5%),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서"(26.5%),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해서"(11.8%), "활동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9.8%)라고 답했다.